

## 第5回 日・韓 學術討論會

主題 / (日本) 書面添附制度 (韓國) 電子稅金計算書

副題 / (日本) 會計參與制度 (韓國) 名稱使用獨占

# 要約發表文

2009. 10. 13(火)

近畿稅理士會/釜山地方稅務士會

第5回 日-韓 學術討論會

要約發表文

主題 및 副題 發表文

- (日本/主題) 書面添付制度에 對하여 / 2  
發表者：業務對策部長 田中勇治
- (日本/副題) 會計參與制度 / 20  
發表者：會計參與普及推進委員長 岩橋一好
- (韓國/主題) 電子税金計算書 發行制度에 對하여 / 28  
發表者：國際理事 郭泰淳
-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使用 獨占 / 40  
發表者：國際部員 黃仁宰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개 요

(5분)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

- 1.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 1. 2 세무대리권한관계 (세무대리권한증서)
- 1. 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 1. 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 1. 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5분)

2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첨부서면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 2.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의 제정
- 2. 2 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운용 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의 제정
- 2. 3 세무대리권한증서 기재사례 · 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
- 2. 4 첨부서면 작성시 세리사의 대응 -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검증 -

(5분)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 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취급
- 3. 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 3. 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 3. 4 의견청취 관련 모의사례 (법인세)

(5분)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 4. 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
- 4. 2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 4. 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 4. 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

(5분)

5 끝맺음에 대신하여 -향후 전망에 대하여 -

##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5분)

먼저,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제도자체의 신설은, 1956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거슬러 갑니다. 서면첨부제도는, 전국의 세리사회에서 구성되어 상부기관인 일세련의 요청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당초에는 「세무행정상 경정 시」에 세리사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신설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 세리사법 개정 시 세리사 업무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원칙적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면첨부가 가능한 세목이 원칙적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 되었고, 새로이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의 심사에 관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는 세리사가 기재한 첨부서면을 존중하고 세리사의 권리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세리사법 제 35조(의견청취) 제 1항에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 되었고, 현재의 서면첨부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 2008년 6월 13일 일세련과 국세청에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대한 합의사항이 「참고자료 1」대로 합의되었고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정착토록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상세한 점은 제 2장 「서면첨부제도가 끼치는 효과와 유의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장 「1. 2 세무대리 권한관계」에 기재한 대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에 의견청취를 할 때 세리사법 제 33조의 2에 규정한 첨부서면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제출이 요건으로 되어있으며 이 서면은, 세리사법 제 30조에 「세무대리 권한증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서면첨부제도의 개요와 의견청취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리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거래형태의 차이에 따라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 시)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구분되며, 앞의 일세련과 국세청에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대한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 2008년 6월 24일부로 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관하여 「법령해석통달」이 「참고자료 2.」대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세리사법 제 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에 대하여는,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 전의 의견청취(제 1항)과, 종래부터 경정처분 전의 의견청취(제 2항) 및 불복신청관련 조사의 의견청취(제 3항)의 3가지로 구분되며, 세무직원에게 부과된 의무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서면첨부제도」와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며,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종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존재의식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켜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즉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서면첨부제도의 변천은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변천이며, 세리사법 제 20 조에 규정된 세무대리 권한을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 2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5 분)

그럼, 제 2 장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첨부서면 작성 시 실무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서면첨부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세련과 국세청에서는 2008 년 6 월 13 일 먼저 설명 드린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환경정비로서 일세련에서는 「참고자료 3.」 대로 첨부서면 작성 시의 유의점과 작성기준이 되는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참고자료 4.」 대로 의견청취 후 조사를 생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서로 조사생략통지를 하는 취지의 「사무운영지침」이, 각각 2009 년 4 월 1 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일세련에서 제정한 지침에 의거 첨부서면의 의의가 명확히 되었으며 첨부서면은 세리사법에 의한 세리사 고유의 권리로서 작성되며, 또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계약에 근거 세리사 업무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제정한 「사무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은 금년 7 월 10 일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서면첨부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고 세무집행을 더욱 더 원활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일세련의 협조가 불가피함을 사무운영지침에서 명확하게 하고, 세리사법 제 35 조의 1 항에 규정된 「조사관련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결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리사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뜻을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의견청취에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이 조사관련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리사법 제 30 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조사담당자가 사전통지예정일 1 주 내지 2 주 일 전까지 의견청취를 할 뜻을 세리사 등에게 연락하며 일시 및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 등이 신고 시 계산한 사항과 의견청취전에 발생한 의문점에 대한 해명이 목적이며,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시 세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 세리사에의 연락은, 의견청취 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현시점에는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알리며,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고 세리사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에 새로운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사전통지를 할 경우에도 다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문제에 대하여는, 제 3장 「의견청취 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문제점」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첨부서면작성시 실무적 대응으로, 세리사법 제 30 조에 규정한 「세무대리 권한 증서」 및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서 첨부서면의 기재방법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확인을 바랍니다.

이 기재사례에서는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시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규정한 첨부서면에 기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조금 전 설명한 순서에 따라 세무직원은 세리사에게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에 의견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견청취결과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연락하며, 「의견청취 결과 통지문」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세련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과 국세청의 「사무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를 운영할 때의 환경은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첨부제도에 관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이며, 여기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과제의 논점으로, 관계된 납세의무자의 선별화, 불공평성, 세리사의 책임문제, 첨부서면의 허위기재와 징계처분, 그리고 세무행정의 하청 등 각론입니다만, 어느 쪽이든 서면부제도의 입법취지의 선례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할 때, 그 과제로 되는 사실적 현상은 일부분만 포착되지 않음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5 분)

그러면, 제 3 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3 장에서는 서면첨부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유의점에 대한 각론입니다.

먼저,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년 4 월 1 일 제정된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서는, 위의 가산세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 기재된 대로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도 원칙적으로(국세통칙법 제 65 조에 규정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비위사항의 지적이 있었는지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거 「경정 예지」의 유무를 판단함으로,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 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 여부에 따르므로 「경정 예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에서는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조사가 있다는 점」보다는 「경정할 것이라고 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 사실인정에 의거 판단되는 것입니다만 이를 규정한 국세통칙법 제 65 조 제 5 항의 해석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은 그 사실인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걸치며,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폭넓게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리사에게 사전통지 전에 의견청취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아직 연락도 되지 않은 단계 혹은 의견청취 후, 실지조사에 착수되지 않은 단계만을 가지고 「무조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구체적 비위사항이 「어떠한 경위로」되었는가 라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서,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단계 즉, 넓은 의미의 조사착수 후 단계입니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위사항을 지적 받기 전에 세무대리권한을 가진 세리사가 확인 또는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이 있음을 예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첨부서면은 세리사의 권리행사로서 첨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위임 받아 세리사가 작성하는 세무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관련 사전통지 前」의 의견청취는 세무당국과 세리사와의 관련사항이고, 또한, 의견청취의 대상은 세리사가 작성한 첨부서면의 기재사항뿐이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검사권이란, 세무직원이 과세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53 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질문 및 검사권한」입니다만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된 첨부서면 관련 의견청취는 어디까지나 세리사 등의 자주적, 그리고 임의적인 첨부서면에 관련된 청취이고, 의견진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질문검사권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무당국도 서면첨부제도를 운영할 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의견청취 시,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견청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시 세리사의 대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첨부제도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서면기재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세리사도 세무관공서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리사법 제 35 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의 목적은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질문검사권의 요건인 조세에 관하여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와는 다르며, 세리사가 작성한 신고서 또는 세리사가 심사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가 서로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신뢰관계가 기초로 됩니다.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리사는 의견청취 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유의점으로 본고에서는 10 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면첨부는, 세리사에게 부여된 하나의 권리이며,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어느 쪽이던, 세리사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세무직원의 엄정한 의무이행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에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실무적 대응으로 제 2 장에서 제시한 사례에 의거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조사관련 사전통지前」의 의견청취 결과 세리사의 개별· 구체적인 의견표명과 세무직원이 질의 결과 신고와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현시점에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5 분)

그러면, 제 4 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가인 세리사의 사회적 평가와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서면첨부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회환경은, 국민의 예상을 초월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사를 에워싼 환경도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을 계기로 국세전자신고·납세시스템(e-Tax)과 지방세 포탈시스템(eLTAX)의 도입,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검토, 게다가 2006 년 5 월 1 일 시행된 회사법 등, 오늘 또 하나의 의제인 「회계참여」가 업무에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세무 및 회계의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 업무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다양화 되리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리사는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고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때 단순한 서면으로서 신고되는 것이 아니며, 사무소의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말은바 임무를 송고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리사가 자기의 책임과 권리로써, 진정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신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서면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로서 중소기업 등 관여된 금융기관의 신뢰조성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가 촉진되는 정세 하에서, 서면첨부 효과가, 세무당국에의 대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금융기관을 비롯한 타관청과 사회에 그 존재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리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시 전문가로서 적정한 주의를 함은 물론, 본인이 깊이 있는 연구를 함은 당연하며, 동시에 법적 책임을 세리사도 의식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첨부제도는 그 책임범위로서 세리사가 자기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첨부서면에 명확하게 자신의 책임범위를 기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행사와 결과로서 자기자신의 법적 방위 기능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신고서에 서면을 첨부하거나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세리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편 과세권자인 세무관공서에서도 첨부서면의 기재내용 및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는 세리사 및 과세관청이 서로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신뢰관계는 기본입니다. 신뢰관계의 조성과정에서 이 제도가 보급되고 성과가 있을 때 입법취지가 실현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 (5 분)

마지막으로,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효과와 유의점 및 「조사관련 사전통지前」 의견청취 등, 제도의 변천에 입각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해 갑니다.

이 제도는,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시 신설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 의견청취(세리사법 제 35 조 제 1 항)」에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고, 세리사법에 부여된 「세리사의 권리」로서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첨부제도에서 「조사관련 사전통지前」 의견청취에는,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첨부서면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권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세무대리 권한증서)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한 세리사의 대응이나 의견에는 개개의 과제임으로, 본고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며, 아울러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가 끼치는 의의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첨부서면의 작성은 임의며 신고서에 서면의 첨부여부 또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도 전부 세리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본 제도의 활용상황은 2001 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적용범위가 확충된 후, 매년 서서히 향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5.7%(법인세/2007 년도)로 현재는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세리사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필연성과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1970 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일본의 「조세법률주의」와 「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하였고 세리사법 제 1 조의 「세리사의 사명」에도 존재합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이고 적정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것은, 세무 및 회계에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 세리사들 입니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 역할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지도의 충실,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정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고를 인정하고, 실지조사를 생략하며 게다가 적정한 납세가 양심적으로 전문적인 세리사의 관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각 세리사회에서는, 각 국세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이며, 긴끼세리사회에서도 2009 년도 중점시책으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을 꾀하며 세리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시책을 한다」 는 점을 필두로, 세리사에 대한 연수회 개최, 세무행정과의 계속적 협의를 통하여 세리사에게 부여된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정착시키기 위하여 회원 전부가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이 서면첨부제도가 더 한층 보급·정착됨에 따라, 세리사법 제 1 조에 규정된 「세리사의 사명」의 실현이 한층 더 꾀하여 지도록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증을 받음 으로서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는 한국의 「성실신고 검증제도」의 도입 예정에 귀 기울려,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가 좋은 지표가 되기를 절망하며 끝맺음에 대신합니다.

이 상

## (日本/副題) 「會計參與制度」

### ~ 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2006년 9월 21일 - 22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 2회 학술토론회에서 「회계참여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싼 경위를 중심으로, 주로 회계참여 제도의 포인트, 즉 Ⅰ. 회계참여의 자격·설치범위·선임방법·인원·임기, Ⅱ. 회계참여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Ⅲ. 회계참여의 책임에 대하여 소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참여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참여란 어떠한 제도인가에 대하여 제 2회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본 제도를 신설한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참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에 관하여 전문식견을 가진 세리사·세리사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이, 이사·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계산서류를 이사등과는 별도로 보존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명시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며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본 제도를 만든 취지는, 특히 회계감사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계산서류의 기재의 적정성을 높이고 회계전문가인 회계참여가 계산서류의 작성에 관여 함으로서, 이사가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주주에게 설명하는 일이 경감되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본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계산서류 기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산서류 작성단계부터 관여하여 회계참여가 당해 회사의 회계 면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참여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며,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회계참여를 설치한 경우, 그 취지 및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을 등기하게 되며, 회사 및 제 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와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회계참여를 등에 따른 메리트로서는, 감사역을 두지 아니한 간소한 주식회사에서도 전문가가 관여한 신뢰성 높은 계산서류를 작성, 명시 함으로서 그 회사의 신용도의 향상과 거래 금융기관 등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 종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용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계참여제도의 경과에 대하여 제도의 보급 및 정착에 관련한 대처상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참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며 제 외국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실지 업무 시에 준거하여야 할 지침이 내외에 없으며, 또한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계산서류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있으므로,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적정」 판단을 하는가라는 물로서, 회계참여가 근거하여야 할 통일적 회계처리 지침 인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이 2005 년 8 월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를 선두로 관계 4 단체에서 책정·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계참여가 직무집행 시 근거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을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와 공동으로 작성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두 지침은 회계참여의 직무수준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계참여가 직무집행 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법상 제도인 회계참여제도는 세리사 업무와는 별도로 무거운 책임문제 가 발생하며 회계참여 업무가 새로운 업무분야이므로 업무착오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도정착의 일환으로서 2007 년 7 월에 회계참여의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보험이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회계참여제도의 대외 PR에 대하여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 관계관청, 중소기업 단체, 금융기관 등에 보급 및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요청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당 회에서도 조금 전에 보신 인쇄물 「회계참여 권유」를 작성하여, 주로 회원의 거래처 등 에게 회원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참여제도 시행으로부터 제도의 주지·정착과 관련한 대처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렸지만, 당 회에서는 특히 회계참여 업무는 세리사 업무와 가장 밀접한 영역 이므로 소중히 키워 나아갈 제도로서 인식하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동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계참여제도의 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회계참여 설치회사에 대하여, 법인 이외가 회계참여로 됨으로 등기첨부 서류로 필요한 세리사회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의 발행건수에 따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금년 7 월말 현재 자격증명서에서는, 세리사회에서 1,580 건,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수는 328 건이며, 세리사법인 및 감사법인을 포함하여도 현재 약 2,000 사 이상 된다고 추정됩니다.

당 회의 발행한 건수는 388 건이며,일본에서 개인세리사가 취임하고 있는 회계참여 설치회사 중 약 1/4 을 당 회 세리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참여로 취임한 세리사로부터 소감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지난 가을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정리한 『회계참여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회답자 474 명)에 의하면, 회계참여 취임에 대하여, 취임경위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요청」이 73.9%로 「본인 스스로」(27.6%)보다 크게 앞질러,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많다고 짐작됩니다. 또한 고문세리사와의 경우에 대하여는 92.7%로, 대부분이 취임기업의 고문세리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시 회사에 요청한 사항은 「회계참여제도의 이해」(70.9%), 「중소 기업 회계에 관한 지침적용」(57.5%), 「회사법의 준수」(50.9%) 의 순서입니다.

취임기업에 대하여, 취임한 기업 수는, 1 사가 78.7%로 가장 많았고, 또한 자본금은 1,000 만엔 이상 3,000 만엔 미만 기업이 55.4%로 절반이상 차지하였고, 창업년도는 30 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5년 미만인 이른바 벤처기업이 21.3%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보수는 1 사당 월 5 만엔 이하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5 만엔 초과 10 만엔 이하, 10 만엔 초과 20 만엔 이하의 순번이었으며, 50 만엔 초과도 1.3%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계참여에 취임하여 좋았던 점은, 「경영자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졌다」(46.1%),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었다」(42.3%), 「금융기관과 거래처로부터 신용도가 높아졌다」(32.9%)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계속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 회계참여제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금년 3월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유효회답 수 4,569사)에 따른 설명입니다.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상황에 대하여는, 회계참여제도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전년도 조사보다 5포인트 증가된 8.5%이며, 「향후 도입예정」(2.3%)인 기업을 더하면 약1할 됩니다. 또한 「주변상황을 보아 가면서」가 12.8%입니다.

회계참여를 의뢰한 회계전문가에 대하여, 「세리사」가 7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인회계사」가 15.5%, 「세리사법인」이 9.4%입니다. 회계참여제도를 이용할 때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50만엔 미만」이 41.6%, 「5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이 31.2%로, 100만엔 미만이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참여를 설치한 이유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를 높이고자」가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다」가 16.9%,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리사로부터 요청」이 11.2%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참여제도의 사회적 요청에 대하여, 회계참여 설치회사를 대상으로 용자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신용보증협회, 은행 등을 합하여 현재 전국에 48개 기관이 있으며, 어느 쪽이던 무담보, 무보증,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우대 용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참여제도의 경과부터 현상까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시다만, 당 회에서는 회계참여제도 자체가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로 손쉬운 도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 회계참여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 ① 대외 PR 확대, ②우대용자제도 추진, ③실무연수회 실시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참여제도에 관하여 보고 드렸습시다. 감사합니다.

## 韓國의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

(6 분)

### 1 부가가치세법 개요

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1.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5 세금계산서

(13 분)

###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2.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2. 2 시행시기
2. 3 발급대상
2.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절차
2. 5 전자세금계산서 송부
2. 6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2. 7 세액공제와 가산세
2. 8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6 분)

### 3 향후 전망에 대하여

3. 1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방안
3. 2 전산법인 설립
3. 3 전산법인 사업추진 현황



## · 부가가치세법 개요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추가로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과세대상에 따른 구분방법으로 국민 총 생산형(GNP type)과 소득형(NNP type) 및 소비형(Consumption type)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과세방법으로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습니다.

가산법이란, 부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공제법은 부가가치의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공제법에는 前段階 去來額 控除法와 前段階 稅額控除法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경제적인 효과로서 수출촉진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 투자유인, 자원배분의 합리화, 세수확보 및 예측의 容易性,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物價騰貴, 조세부담의 역진성,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과 매출이 확정되며, 영수증 및 청구서의 기능 외에 장부로서의 기능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원적 기능,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의 轉嫁가 가능합니다.

#### (2) 파생적 기능

- 1)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송장(invoce)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 2)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3)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전자세금계산서관, 세법상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기존 종이계산서와의 차이점은 발행되는 형태의 차이이며, 암호화된 알고리즘 (Algorithm)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드디스크 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출력에 따른 비용이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매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어 신고기간 세무사사무소의 분주함은 없어지게 됩니다.

### 시행시기

- (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단지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절차

- (1)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교부 중계사이트 (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하는 방법과
- (2) 국세청 발행시스템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전산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 (3) 전화기를 통한 ARS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한 VAN 단말기 발행 방법이 있으며,  
\* (3)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가 해당되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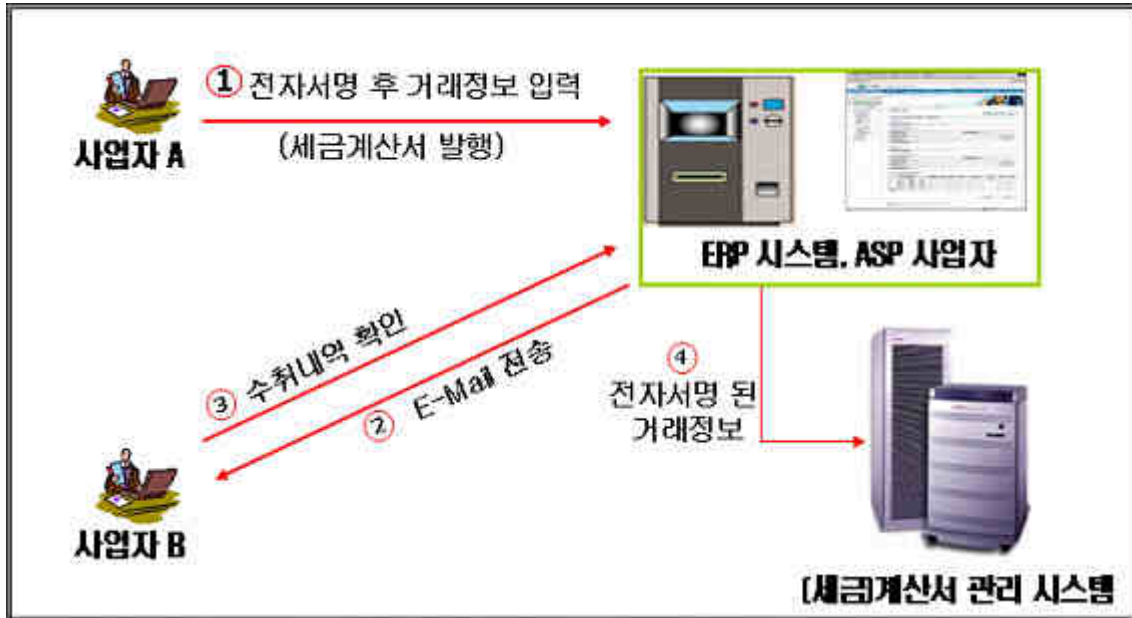
- ①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 인증서 발급비용  
법인:4,400 원(개인 2,200 원), 범용:110,000 원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송신한다(인터넷 전산시스템)
- ④ 수신 후 승인(공급 받는 자)통지를 합니다.

ASP 사업자 등은 국세청이 개발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지침」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표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ASP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자 및 ASP(중계 사업자)사업자, 그리고 국세청 전산시스템별 교부 절차는 하기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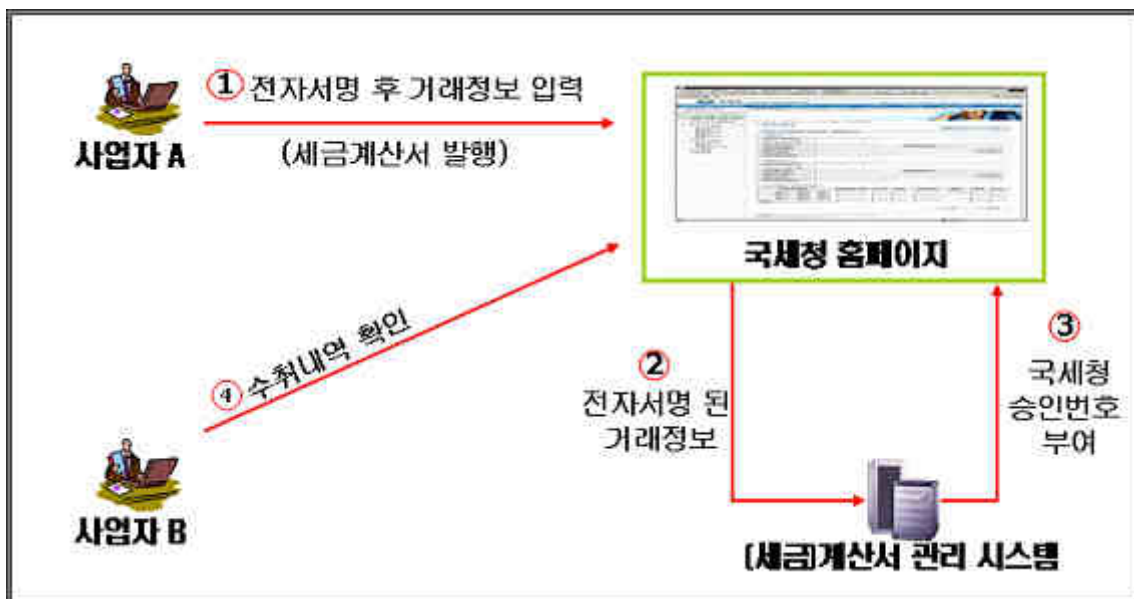
- (1)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 등 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ASP) 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교부절차 도해)



- (2)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소규모 사업자)

(교부절차 도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아야만 합니다.

### (1) 법인사업자 (37만 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SP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mail 계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 (400만 명)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E-mail 계정이 있어야만 하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3) 공인인증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E-Mail 계정

가급적 대용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요정보로서 다루도록 일종의 “국세청 발송 메일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獨占使用 그 後

### I. 서론

개정전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하는 세무대리 일원화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일원화였으며,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세무사의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납세자의 인식과 선택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위헌여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을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되었다.

### II.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의 진행과정

#### 한국세무사제도 변천과정

우리 세무사법은 1961.9.9.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여 탄생하였다. 당시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하였다. 1989년에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인 세무사는 전업인 경우에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상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세법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명칭으로만 표시되어 세무사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배제를 추진하여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자동자격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각자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각국의 사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대부분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각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리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세무대리 일원화를 이루었다

## 세무사법 개정내용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2004년부터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여기에 등록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의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규정 중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된다

### 법 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법 적용요약표

(법률 제 7032 호) 2003년 12월 31일 법 개정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 취득자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 취득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구 분				
1)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①재정경제부 세무사등록부 등록	필수	임의	불가	불가
②재정경제부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무관	무관	필수	불가
③세무사명칭사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2)세무사법 적용여부(등록에 한함)				
①한국세무사회 가입 및 제명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②교육 관련 의무규정	없음 1)	없음 1)	없음	없음
③징계 관련 규정	적용 2)	적용 2)	적용 2)	없음
④업무(비밀엄수, 신의성실 등)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⑤벌칙 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⑥기타 규정	적용	적용	없음	없음

\*1) 전업인 경우에는 적용

\*2) 세무사회 회칙 위반 관련한 징계규정은 적용 아니함

### III. 세무사 명칭의 독점사용 그 이후

#### 세무사 명칭 독점사용으로 인한 효과

- (1)세무대리 시장에서 각 자격사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세무서비스 질의 향상
- (2)소비자로 하여금 명칭혼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세무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소비자 합리적인 선택권 제고
- (3)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과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라는 인식을 제고
- (4)자격이 있으면서 명칭사용 금지는 업무수행에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동자격폐지와 유사한 효과

#### 세무사법 개정 이후 진행사항

##### 1)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세무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명칭’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소수의 반대의견은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며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은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재발의(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08.8.7)

변호사자격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 제고②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전문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③전자세정의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④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 ⑤자격이 있으면서 명칭을 사용 못하는 입법적 모순 해결 ⑥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서비스 분야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 보고가 있다.

한편, ①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어도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실익이 없다는 점 ②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최근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 IV. 향후 과제

한국세무사제도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복잡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자격폐지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함께 입법과정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으며, 자동자격폐지는 세계적 추세로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개정 후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실효성의 문제점으로 있어 공인회계사회와 꾸준한 대화와 논리의 연구로 자동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은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자격사의 대량배출과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법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무·회계시장의 과다경쟁 속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와 권익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